##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규정

개정 2011. 5. 13. 연수원규정 제65호 개정 2014. 2. 05. 연수원규정 제74호 개정 2015. 2. 27. 연수원규정 제75호 개정 2016. 5. 16. 연수원규정 제81호 개정 2019. 12. 30. 연수원규정 제90호 개정 2020. 5. 19. 연수원규정 제93호 개정 2022. 6. 20. 연수원규정 제97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수계획) 연수계획은 매년도 연수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립한다. 다만, 교육공무 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계획은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의 승인을 받아서 수립한다.
  -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기본방향과 지침
  - 2. 연수원의 연수목표와 연수방침
  - 3. 연수원의 연수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
- 제3조(연수종별) ①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기타연수 등으로 구분한다.
  - ②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직원(교원 제외) 및 교육공무직원의 연수는 기본교육 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 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 제4조(연수과정 설치 등) ①연수과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연수계획에 의하며,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 각 연수과정별로 책임 담당자를 지정 배치한다. ②원장은 연수원의 연수목표와 일치하고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탁한 기관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경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원장은 연수의 목적 및 내용, 연수의 종류, 분야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 기관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함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 각 연수과정의 교과편성은 연수지침에 근거하여 직무와 관련된 교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가 정책교과 및 도교육청 정책교과
-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의 연수과정표
- 3. 교(원)장 · 교(원)감 · 수석교사 ·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 제6조(연수대상자의 선발) ①원장은 각급 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수대상자 중 연수 과정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연수시작 20일전까지 각급기관 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연수희망자가 부족하여 대상자 선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연수대상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격자를 다시 선발하여 연수시작 5일 전까지 통보한다.
- 제7조(연수방법) 각 연수과정별 연수방법은 과정의 목표, 특성, 연수인원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토의 및 발표, 현장견학, 재택연수, 원격연수 등 다양한 연수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기준 등) ①강사 선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과정담당자가 추천하고 소정의 협의회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 1. 대학에서 해당과목에 관한 교육을 담당한 전임강사 이상인 자
  - 2.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해당과목의 연구와 실무능력이 탁월한 자
  - 3. 특별초빙강사와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강의수당, 교통비, 원고료 및 기타수당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연수생 등록) ①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연수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연수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연수생 준수사항) 연수생은 연수기간 중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1. 과정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연수에 임한다.
  - 2.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하고, 결석, 결강, 조퇴, 외출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장연수는 연수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 3. 연수기간 중 소정의 명찰을 패용한다.
  - 4.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켜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은 금한다.
  - 5. 공공시설과 비품을 소중히 다루며, 화재 및 도난 방지에 유의한다.

- 6. 연수원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 7. 연수생은 연수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연수생 퇴원) 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는 퇴원 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연수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였을 때
  - 3. 연수생활을 매우 게을리 하였을 때
  -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5. 연수에 관한 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6. 다른 연수생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연수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 7. 질병 또는 연수생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 제12조(연수평가) 연수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수과정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연수평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제13조(시상과 표창)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와 연수생활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수료) ①집합연수는 이수시간의 10분의 9이상(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되는 시간을 이수한 사람을 수료자로 한다. 단, 60시간이상의 연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의 사망과 관련한 결강으로 인하여 이수요건에 미달될 경우와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 제1항의 요건 이외에 연수성적이 총 취득성적의 60%이상인 사람을 수료자로 한다.
  - ③원격연수는 온라인평가 이수기준(학습진도율, 형성평가, 과제평가 등)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수료자로 하며, 세부규정은 원격교육연수 운영규정을 따른다.
  - ④혼합연수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이수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수료자로 한다.
  - ⑤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이수증은 수료자로 하여금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이수관리) ①연수자의 이수사항은 해당 연수과정 이수처리 후 NEIS로 전 송 처리하고, 연수기간 중 결석·결강·조퇴·외출 등의 근태 상황을 연수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미이수·미등록자도 연수대상자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②연수자의 학적사항은 연수과정별로 전자적으로 관리 보존한다.
- 제16조(설문조사) 과정별 연수담당자는 당해 연수과정의 목표달성도, 연수생의 반응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수생을 대상으로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규정 제·개정) ①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의 구성은 각 부장과 과장, 교수부의 기획담당, 운영부의 기획담당, 행정연수과의 기획담당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수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총 무담당으로 한다.
  - ③규정의 제·개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협의회 구성) 원장은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기타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심의할 수 있다.
  - 부 칙 (2011. 5. 13. 전라북도교육연수원규정 제65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교육연수원운영세부 규정, 강사선정규정, 외래강사수당지급규정, 연수표창규정,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중등교사한문과부전공자격연수운영규정, 연수생생활수칙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연수평가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본 연수원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를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운영규정에 의거"로 한다.

- 부 칙 (2014. 2. 5. 전라북도교육연수원규정 제7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 2.27. 전라북도교육연수원규정 제7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5. 16. 전라북도교육연수원규정 제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0. 전라북도교육연수원규정 제9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19. 전라북도연수원규정 제93호) 이 규정은 2020. 7.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0. 연수원규정 제9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